

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-56호

「안동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안동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

안 동 시 의 회 의 장



「안동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(2022. 1. 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→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와 제86조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3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→ 제71조

다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0조)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 → 제86조

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3. ~ 2021. 12. 8.(5일 이상)

4. 의견제출

「안동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21년 12월 8일까지 안동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 · 성명(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 또는 직접방문

1) 전자우편 : flora99@korea.kr

2) 주 소 : (우36691) 안동시 퇴계로 115(명륜동), 안동시의회

3) 팩 스 : 054-840-640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안동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■ 조례안명 : 안동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안동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안동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와 제8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와 제86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·② (생략) ③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 :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